

# EU Brief

| EU 동향 |

- 유로존 재정위기와 향후 과제  
Eurozone's Fiscal Crisis and Issues ahead
- ECB의 금융완화정책과 유럽 자본의 신흥국 투자  
ECB's Monetary Easing and EU's Investment in Emerging Markets
- 2014년 유럽의회 선거와 극단주의 정당의 약진  
The 2014 European Parliament Election and the Advance of Extremist Party
- 우수한 인적자원과 FDI 유치를 통해 혁신성을 제고시키는 유럽 선진국  
Enhancing Innovation through Human Capital and FDI
- 유럽 축구산업 현황과 글로벌화  
Europe's Football Industry and its Globalisation Strategy



**YONSEI**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5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r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 EU 개인정보보호 규제 동향: 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칙 개정안을 중심으로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Reform in 2012

On January 25<sup>th</sup> 2012, the European Commission proposed a comprehensive reform of the EU's 1995 Data Protection Directives to strengthen online privacy rights and boost Europe's digital economy. This amendment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one in several aspects: 1) it takes the form of 'regulations' rather than 'directives'; 2) it adopts the 'right to be forgotten' which is a right to demand deletion of data no longer needed for the purpose for which it was collected; 3) it strengthens data protection authorities of each member country, and makes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a sole coordinator of EU-wide enforcement; and 4) it imposes tough sanctions in case of violation. In light of the recent revelation on the NSA's unlawful data collection, the EU is looking to tighten privacy laws, with this amendment as the first step. Because the EU strictly prohibits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countries, the amendment will have a direct impact on the Korean firms in the EU. The amendment is also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 blueprint for the future of Korea's privacy laws.

###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개인정보보호

안전행정부에 최근에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난 지금 개인정보주체의 법에 대한 인지도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법령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서는 EU가 제반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데, 주로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증대 및 이를 위한 규제 강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한국은 정서적인 친밀감 때문인지 미국보다는 EU의 규제동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동조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향후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의 방향성을 미리 예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EU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개인정보보호규칙 개정안의 내용 및 처리동향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 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칙 개정안 내용

EU 집행위원회는 2012년 1월 25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규칙 개정안<sup>1</sup>을 발의

하였다. 이 개정안은 1995년 제정된 정보보호지침의 원칙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새롭게 수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정안 발의 이후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3년 3월 19일 유럽의회 법사위원회, 그리고 2013년 10월 21일 관련 상임위원회라 할 수 있는 시민자유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현재 본회의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EU가 새롭게 발의한 2012년 개정안은 기존의 정보보호지침을 대체하는 것으로 ① 법 형식에 있어서 '지침(Directive)'이 아니라 '규칙(Regulation)'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② 새로운 정보기본권으로서 '잊혀질 권리'를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점, ③ 개별 회원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단일한 유럽정보보호위원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를 설치하고 있다는 점, ④ 위반 시에 강력한 제재규정(최고 100만 유로 또는 회사의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2%)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sup>2</sup>

개정안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역대 개인정보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sup>1</sup> European Commission (2012.1.25.). Commission proposes a comprehensive reform of data protection rules to increase users' control of their data and to cut costs for businesses.

<sup>2</sup> 함인선 (2012). "EU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을 중심으로 하여." 『저스티스』, 133호.

이는 개정안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도 목적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규범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는 컴퓨터 등으로 작성한 디지털 정보뿐만 아니라 수기로 작성한 정보도 포함한다. 지역적 범위와 관련해서는 EU 내에서 관리자 또는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보처리활동이 EU 내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경우 EU 영역 밖에 있는 관리자가 EU 내에 거주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개정안은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수집·이용되어야 하며, 부정확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기존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2012년의 개정안에서는 1995년 정보보호지침에 비해 정보처리에 있어서의 투명성 원칙과 정보 수집의 최소화 원칙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개인정보 관리자는 정보주체가 용이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자는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절차가 있음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관리자는 정보 수집의 주제, 목적 등 일정한 사항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주체는 정보 수집과 관련된 통지를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관리자에게 자신에 관한 부정확한 개인정보를 정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2012년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된 권리에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있다. 이것은 정보주체가

관리자에게 ① 수집 또는 처리 목적과 관련하여 그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보주체가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동의한 보관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를 거부한 경우, ④ 개인정보의 처리가 다른 이유로 당해 규칙안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추가 배포를 금지할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에 따르면, 관리자가 이미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제3자에게 정보주체가 그 개인정보에 대한 링크나 복사 또는 복제 일체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 '정보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정보가 전자 도구로 처리되는 경우 이용이 허용되는 정보를 정보주체가 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처리에 동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전자 형태로 다른 곳으로 전송할 권리가 있다. 한편,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처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다만, 관리자가 정보주체의 이익 또는 기본권에 우선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고 이에 대한 합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 역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가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정보 이전이 가능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는 개인정보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에 따라 EU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관들은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권한을 갖게 된다. 관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불복하는 정보주체는 감독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공익단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사법 절차를 통해 감독기관이 관리자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거나 관리자의 정보처리 자체에 대해 권리 침해 회복을 위한 조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재수단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은 관리자에 대해 최고 100만 유로 또는 기업의 전 세계 연매출액의 2%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EU 개인정보보호규칙 개정안의 처리 동향

EU의 2012년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삭제할 권리를 새롭게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에 엄격한 제한을 가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유럽 및 미국 기업들과 미국정부가 개정안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EU 회원국들도 개정안 처리에 유보적인 반응을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화 도청하는 등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자행한 것이 밝혀지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관계가 냉각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EU의 개인정보보호제도들이 한층 강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sup>3</sup>

유럽 국가들은 2013년 10월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의제로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상정해 논의하였다. EU는 당초 회원국 간에 이견이 표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이 사안을 의제에서 제외했으나 유럽 각국 정상들을 상대로 한 미국의 불법 도청 사실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EU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이 추진력을 얻게 되었으며, 반대로 미국의 IT 기업들은 강화된 EU의 개인정보보호정책으로 인해 곤란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의회 시민자유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제3국 전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규칙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EU는 또한 최근 미국 IT 기업의 주요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규정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EU 당국은 안전하고 믿을 만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EU 당국은 애플과 구글 등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버 자체가 미국에 있어 미국 정보기관이 손쉽게 서버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sup>4</sup>

최근 유럽의회는 미국과의 은행계좌 정보공유를 중단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는 미국 정보당국이 국가 간 은행계좌 거래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은행 간 통신망(SWIFT)을 감시해온 것에 대한 항의라 볼 수 있다. 이미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정보당국의 감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미국과의 은행계좌 정보 공유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중단할 것임을 밝혔다. EU는 미국이 EU의 사생활 보호법규를 존중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금융거래와 항공승객 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하였다. 국제은행 간 통신망 시스템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으로 인해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차질이 발생할 소지가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 도청사실이 알려진 후 독일정부 관계자들은 미국과 EU 간의 자유무역협정인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체결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틴 슈츠 유럽의회 의장도 미국에 대한 유럽의 신뢰 추락 등을 감안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비비안 레딩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보보호 규정이 미국과 협상 중인 자유무역협정 범위 밖에 있는

문제라며 독일의 요구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상에 개인정보에 관한 논의를 포함시킬 경우 오히려 유럽의 정보보호 기준이 낮아질 수도 있음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sup>5</sup>

###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EU의 수정권고

EU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구글에 대한 EU의 수정 권고를 들 수 있다. EU 규제당국은 2012년 구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EU 정보보호지침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구글에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sup>6</sup> EU 규제당국은 구글이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구글은 2012년 3월 지메일과 유튜브를 비롯한 자사 60여 개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일원화하고, 이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타깃 광고에 활용했다. EU 규제당국은 구글의 신규 개인정보보호정책이 개인정보 수집범위와 보관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용자들의 검색정보 및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정보까지도 수집하고 있어 개인정보가 남용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EU 규제당국은 회원국 전원의 동의를 얻어 구글에 대해 수정권고를 하였고, 구글이 문제가 된 조항을 자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허용하였다. 수정권고안에는 ①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에 대한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 절차 제시, ②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이용자의 통제권 강화, ③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sup>7</sup>

이에 대해 구글은 자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EU의 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였다고 반박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개정 목적이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있어 변동사항이 없고 이용자가 원할 경우 서비스 이용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구글은 미국에서도 이용자들의 검색 기록을 추적하였다는 혐의로 2,2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전력이 있다.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구글이 별도의 개선 조치를 제시하지 않아 스페인, 프랑스 등 6개국은 2013년 4월 구글이 자국의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sup>8</sup> 현재 EU 각국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률 위반에 대해 일정 액수를 벌금 상한으로 정하고 있으나, 2012년 개정안이 도입되면 구글은 전 세계 매출액의 2%까지 벌금으로 부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EU의 개인정보보호규칙 강화 움직임이 주는 시사점

EU의 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칙 개정안은 현행 1995년 정보보호지침에 비해 구속력이 강화된 '규칙(Regulation)'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 개인정보 감독기관의 권한을 강화한 점,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일관된 수행을 위한 유럽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한 점, 벌금 상한을 높이는 등 실효성 확보수단을 강화한 점, 잊혀질 권리를 새로운 정보기본권으로 도입한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불법적인 정보 수집이 폭로되면서 개정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EU 역내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함에 따라 EU 국가들과 무역 거래를 하고 있는 한국기업에도 개인정보보호규칙 개정안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EU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일정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조만간 한국 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sup>5</sup> "EC, 개인정보 문제는 자유무역협정 대상 아냐." (2013.11.5). 『파이낸셜뉴스』.

<sup>6</sup>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EU 구글 개인정보보호정책은 EU 기준 위반, 수정 권고 위반시 제재 경고." 『주간 인터넷 동향』.

<sup>7</sup> 정보통신방송해외정보시스템 (2013.4.12). "유럽 6개국 구글의 개인정보방침 논의."

<sup>8</sup> "EU 6개국, 구글 사생활 침해에 공동 법적 조치." (2013.4.3). 『뉴스』.

<sup>3</sup> "미-EU 관계 급랭, 개인정보보호법 급물살." (2013.10.25). 『연합뉴스』.

<sup>4</sup> "스노든 사태와 정보 주권." (2013.8.11). 『디지털타임스』.